원당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

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및지형도면고시도

구 분	용 도	허용용도	불허용도	건폐율	용 적 율	높 이
A-1	단독 (1종)	단독주택 /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 주교시설 중 주민센터	-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% 이하	150% 이하	3층 이하
A-2	단독 (2종)	단독주택, 근린시설	-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% 이하	180% 이하	3층 이하
A-3	단독 (1종)	단독주택 /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 주교시설 중 주민센터	-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% 이하	100% 이하	2층 이하
A-4	단독 (2종)	단독주택, 근린시설	-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% 이하	120% 이하	2층 이하
B-1	다세대주택/ 연립주택 (2종)	단독주택 / 종교시설 다세대(빌라)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(3.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면 적용) 나. 근린생활시설(1종)(의료원제외)	-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% 이하	200% 이하	4층 이하
C-1	연립주택 (2종)	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(3.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면 적용)	-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40% 이하	120% 이하	4층 이하
D-1	고층APT (3종)	APT 및 부대복리시설 (3.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면 적용)	-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30% 이하	250% 이하	20층 이하
D-2	고층APT (3종)	APT 및 부대복리시설 (3.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면 적용)	-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30% 이하	250% 이하	15층 이하
D-3	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분양되지전 KAL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					
E-1	일반상업	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유흥 주수시설 중 주류판매점, 유흥주점, 휴게시설, 한의원,조리시설, 학원(외국어 및 보습시설) (종교시설 중 교회, 성당, 사찰은 제외) (종교시설 중 교회, 성당, 사찰은 허용) 주거 및 주거지역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중이용업소(영업장면적 합계가 3천㎡ 이상인 것) 동식물 관련시설 도축시설	70% 이하	330% 이하	3~5층
E-2	일반상업			70% 이하	550% 이하	5~8층
F-1	학 교	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(3. 유치원은 제외)	-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30% 이하	100% 이하	5층 이하
G-1	공용의 청사	1종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, 파출소,우체국(보건소 및 공공의 요양소 시설 및 업무시설은 공공업무시설	-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% 이하	250% 이하	5층 이하
H-1	주 차 장	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	-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90% 이하	1,500% 이하	28m 이하

※ 주) "D-1"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"A-2"계획내용 준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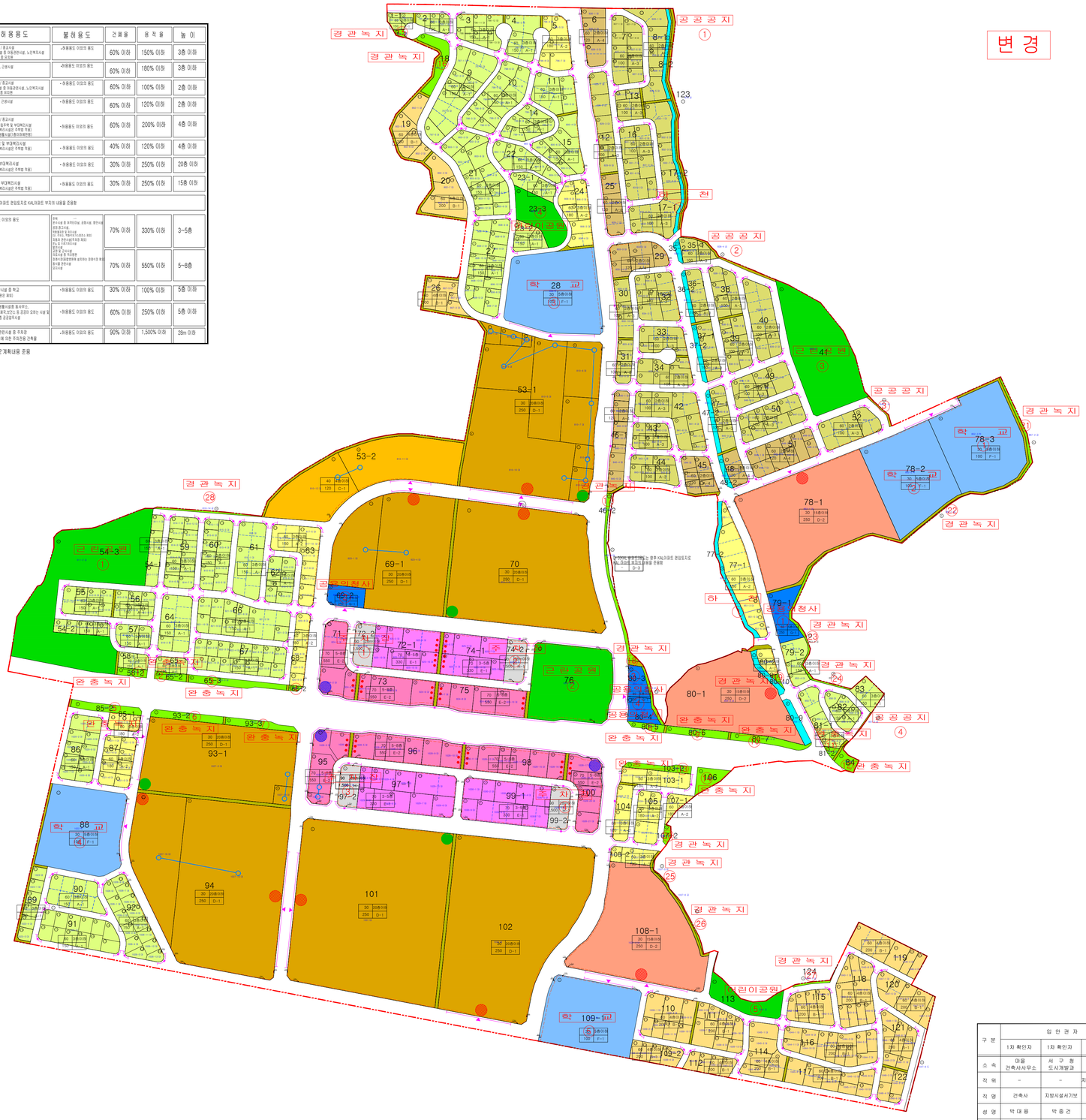

구 분	입 안 권 자			결 정 권 자	
	1차 확인자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
소 속	대을 건축사사무소	서 구 청 도시개발과	서 구 청 도시개발과	서 구 청 도시개발과	서 구 청 도시개발과
직 위	-	-	지역개발현안담당	-	지역개발현안담당
직 명	건축사	지방시설서기보	지방시설주사	지방시설서기보	지방시설주사
성 명	박 대 용	박 종 건	황 재 현	박 종 건	황 재 현
확인인					
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

범 례

- 지구단위계획 구역계
- 보행자 전용도로
- 공 원
- 학 교
- 공용의 청사
- 녹 지
- 공 공 공 지
- 하 천
- 쌈 지 공 원
- 공동주택지내 분산상가
- 공 개 공 지 (피로티로 계획시 1층 높이를 4m 이상)
- 차량출입허용구간
- 차량출입불허구간
- 획지경계선
- 대지분할가능선(권장)
- 벽 면 지 정 선 (1m-1층에 한함)
- 공동건축 (권장)

60	3
180	A-2

건 폐 율	높이(최고층수)
용 적 률	건축물의 용도

건 축 한 계 선

10m - 상업, 공공시설 : 1.0m
12m - 모든 용도 : 1.0m
17m - 모든 용도 : 1.0m
20m - 단독, 공공시설 : 1.0m
상업, 공동 : 1.5m
단, 학교시설은 3.0m
40m - 상업, 공공시설 : 3.0m

N

0 50 100 150 200 250 300(M)